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受容

李 光 麟

- I. 序 言
- II. 開港以後 民主主義 理念의 受容
- III. 獨立協會의 民主主義 運動
- IV. 國家主義의 擡頭와 民主主義의 衰退
- V. 結 語

I. 序 言

民主主義(Democracy)의 語源은 그리스語의 Demos(人民)와 Kratos(支配)를 합친 말에서 由來하였음은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러니까 人民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의 大統領「링컨」(Abraham Lincoln)이 말한 바 “人民의, 人民에 의한, 人民을 위한 政治”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權力이 한 사람에게 屬하는 君主政治나 少數者에 屬하는 貴族政治와 對立되는 概念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란 人民이 權力을 所有함과 同時에 行使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民主主義가 實現되려면 한, 두가지 基本的 與件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與件이란 人權이 保障되어야 하고 社會參與에 있어서 누구나 自由와 平等을 享有해야 한다. 이는 극히 當然한 것 같지만 실상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完全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權力을 行使함에 있어서도 方法上으로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이를테면, 執權者의 選出, 效果的인 意思傳達, 複數政黨, 合議(consensus)와 規則(rule)을 지키려는 態度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民主主義는 韓國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 오늘날 우리 周圍를 돌아보면 누구나가 民主主義, 혹은 民主化를 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民主主義의 實現에 대해 누구나가 크게 關心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民主主義는 그 實現을 위해 많은 努力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角度로 진지하게 檢討되어야 할 課題라고 생각된다.

今般 筆者는 韓國 國民이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民主主義를 받아들여 그것을 實現해 보려고 하였으며, 또 그 發展過程은 어떠한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歷史的 考察을 試圖해 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作業은 오늘날의 韓國 民主主義에 대한 評價와 反省을 해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Ⅱ. 開港以後 民主主義 理念의 受容

民主主義는 元來 西洋에서 發達된 것이었다. 그러나 東洋의 價値속에도 民主的 要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儒敎에서 말하는 「民本」이나 「禮讓」같은 것은 分明히 主權者가 人民임을 밝히고 있고, 平等思想과 寬容精神을 나타내고 있어 익히 民主的 要素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思想 自體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實踐的인 面을 보면 忠孝를 강조하는 主從關係나, 父는 子의 天이요, 夫는 婦의 天이라는 따위의 上下의 階級關係를 基本原理로 삼고 있다. 따라서 西洋에서와 같은 橫的關係가 아니라, 縱的關係가 重視되었던 것이어서 오히려 反民主的인 行爲가 支配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韓國의 傳統社會에서는 性理學(朱子學)이 尊重되었었다. 이는 客體의 事物의 理致를 窮明하고, 自身이 그 理致속에서 살기를 目標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理致란 잘 알려져 있듯이 上下定分의 理致였다. 다시 말하면, 封建的, 上下의 秩序를 강조하는 精神이었다. 그러므로 性理學이 支配하는 社會에서는 民主主義의 實現을 바랄 수 없었다고 하겠다.

舊韓末 皇城新聞의 主筆이었던 朴殷植(1856~1926)이 「儒敎求新論」¹⁾이

1) 『朴殷植全書』 下卷(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5), pp. 44~48.

란 글을 발표한 바 있었다. 여기서 그는 韓國의 儒敎에는 몇 가지 改革할 점이 있다고 말하고, 그 첫째로 既往의 儒敎는 그 精神이 全적으로 帝王 側에 있고 人民社會에 普及할 精神이 不足하므로 孔子의 大同主義와 孟子의 民爲重之說에 依據하여 民衆의 儒敎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韓國의 傳統社會를 支配하였던 性理學이 어떤 弊端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改革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性理學이 支配하는 社會에서는 民主主義가 발달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民主主義는 韓國의 內部에서 발달되지 못하고, 外部에서 韓國에 들어왔다고 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 韓國에 들어 왔을까. 역시 1876년의 開港以後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開港과 同時에 徐徐히 西洋文明이 이 땅에 移植되면서 民主主義 理念과 生活方式이 흘러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保守勢力의 頑強한 抵抗을 받으면서도 基盤이 조금씩 잡혀 갔다.

1884년에 甲申政變이 일어났다. 이 政變은 近代化를 표방하고 나선 靑年 政治家들의 舉事였다. 그러나 三日天下로 비극적 終末을 告하고 말았다. 그들은 保守勢力의 事大政策에 反對하고 韓國社會를 急進的으로 改革코자 政綱도 公布하였다. 오늘날 남아 있는 政綱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條目이 포함되어 있다.

- 一. 門閥을 폐지하고 人民平等의 權을 制定하고 才能에 의해 人材를 登用할 것.
- 一. 그동안 流配 또는 禁錮된 罪人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결국 위의 條目들은 人權을 尊重하고 平等을 保障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政變을 主導하였던 金玉均이 政變이 失敗한 뒤 日本에 亡命하여 쓴 上疏文을 보면,

(上略) 臣이 多年 見聞에 據하여 陛下에 奏上한 바 有하오는데 陛下는 此를 기억하

시나이까. 그 뜻은 今日 我邦 所謂 兩班을 芟除함에 있나이다. 我邦 中古以前 國運이 興盛할 시에는 일체의 器械產物이 東洋三國에 冠하였는데 今에 總히 廢絶에 屬하여 다시 그 흔적도 無함은 他故아니옵고 兩班의 跋扈·專橫에 인하여 그렇게 되었나이다. ……(中略) 方今 世界가 商業을 主로 하여 서로 生業의 多를 競할 時에 당하여 兩班을 除하여 그 弊源을 芟盡할 事를 務치 아니하면 國家의 廢亡을 기대할 뿐이오니……(下略)²⁾

라 하여, 兩班을 없애 버려야 나라가 잘 된다고 하였다. 金玉均이 이처럼 兩班을 없애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身分打破를 내세웠던 前記 政綱과 一脈相通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甲申政變은 大衆의 기반을 갖지 못하고 少數의 先覺者에 의하여 일어난 위로부터의 改革이요, 또 外勢에 依持하여 實現해 보려던 改革이었다는 點에서 後世 사람들의 비난을 종종 받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韓國의 歷史를 통해 처음으로 人權을 尊重하고 平等을 保障 하겠다고 宣言한 點에서 적지 않은 意義를 지닌다고 하겠다.

1880년 後半期에 들어서 自由와 民主主義를 상징하는 나라인 美國의 教育者와 醫師들이 宣敎事業의 目的으로 入國하였다. 그리고 教育機關을 설치하고 新式 教育을 실시하면서 西洋人의 生活樣式, 즉 道德, 習慣 등 虛飾에 사로 잡히지 않고 個人의 自由와 平等觀念에 입각한 民主主義의 生活와 精神을 고취하였다. 이 때문에 그 數는 적었다 해도 이와 같은 基督敎 學校에서 修學한 젊은이들이 점차로 民主主義 生活와 精神을 體得하게 되었다.

1894년 東學農民運動이 韓國의 西南部에서 일어났다. 이 運動은 腐敗한 政府에 대해 一般 民衆이 抗拒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改革運動이었다.

특히 全瑛準 등에 依해 全羅道 53州(邑)에 執綱所라는 一種의 民政機關이 설치되어 治安의 담당과 아울러 弊政改革이 推進되었다. 改革 要綱 12

2) 閔泰琰, 『甲申政變과 金玉均』(國際文化協會, 1947), pp. 68~75.

個條 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 一. 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罰할 것.
- 一. 奴婢文書는 불태워 버릴 것.
- 一. 七班賤人의 대우는 개선하고 白丁 머리에 쓰는 平壤笠은 벗어 버릴 것.
- 一. 青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것.
- 一.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것.

요컨대, 身分上의 모든 差別待遇를 폐지함과 同時에 耕作地를 고루 나누어 生計를 保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東學農民運動은 淸日兩軍의 角逐과 日軍의 침투를 誘發시키고, 또 政府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것이므로 곧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中央에서는 甲午改革이 斷行되었다. 軍國機務處라는 立法權을 가진 超政府的인 機關이 설치되어 이 機關의 會議員들에 의해 傳統的인 政治經濟·社會制度가 대대적으로 改革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社會制度의 改革은 劃期的인 것이었다. 그 重要的 事物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一. 門閥과 兩班·常民 등의 階級을 打破하고 貴賤에 不拘하고 人材를 뽑아 登用할 것.
- 一. 文武尊卑의 差別을 폐지하고 다만 品階에 따라 相見儀를 규정할 것.
- 一. 罪人 自身外의 一切 緣坐律을 廢할 것.
- 一. 嫡妻와 妻에 모두 無子할 경우에 養子함을 許用할 것.
- 一. 男女의 早婚을 嚴禁하여 男子는 20세, 女子는 16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結婚을 許할 것.
- 一. 寡婦의 再婚은 貴賤을 莫論하고 그 自由에 맡길 것.
- 一. 公私奴婢法은 一切 革罷하고 人身의 賣買는 禁할 것.

以上の 條目들은 모두 韓國社會에서 오랫동안 弊端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韓國이 民主社會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澈결해야 할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改革도 國民들이 오랜 慣習에서 헤어나지 못해 따르

지 않았고, 또 國民의 支持를 받지 못한 金弘集內閣에서 推進되었던 것이어서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단지 從來의 뿌리박힌 前近代의 人制度와 慣習은 早晚間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國民들에게 高揚시켰다는 點에서 그 意義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Ⅲ. 獨立協會의 民主主義 運動

한 나라의 民主主義는 그 國民과 社會의 改革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政治的 改革으로서는 큰 效力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制裁나 壓力에 의하여 實現될 수 있는 바가 아니오, 國民의 啓蒙과 自覺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自由와 平等을 위해 일어서야만 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었다. 이는 西歐 民主主義가 無數한 人들들의 희생을 치르고도 지나간 세월을 두고 슬한 試練을 겪음으로서 確立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보면, 아래로부터 일어나 民主主義 運動이면서 매우 조직적이고, 또 우리 社會에 크나 큰 影響력을 끼쳤던 獨立協會의 活動을 잊을 수가 없다. 獨立協會는 1896년 7월에 설치되었는데, 國內最高의 知識層이 처음에는 依他的인 國民에게 獨立意識을 불어 넣어 주고 近代思想과 知識을 普及하려고 했던 것이나, 나중에는 內政改革을 포방하고 나선 政治團體로 바뀌었다.

이 協會의 創設者는 徐載弼(1866~1951)이었다. 그는 1884년의 甲申政變에 加擔하였다가 失敗한 뒤에는 美國으로 亡命하여 1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西歐의 敎育을 받았으니 당시 우리 國內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民主主義의 根本을 體得한 人物이었다. 그는 美國에서 高等學校와 醫科大學을 졸업하여 醫師가 되었으나 1895년 末 귀국하여서는 野에서 國民을 啓蒙하는 일에 沒頭하게 되었다.

그는 高等學校 時節 18세기 西洋의 啓蒙主義時代의 思想家, 이를테면

「로크」(John Locke), 「벤담」(Jeremy Bentham), 「루소」(Jean Jacques Rousseau), 「몽테스키에」(Charles Montesquieu) 등의 著書를 탐독하였는데, 이것은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精神的 바탕이 되었다.

그가 얼마만큼 國民의 啓蒙에 關心이 컸던가에 대해서는 귀국한지 3개월도 채 못된 時期인 1896년 3월 『韓國彙報』(Korean Repository)에 投稿한 “오늘날 韓國이 가장 必要로 하는 일”(What Korea needs most)이란 論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韓國彙報』라는 英文雜誌는 당시 韓國에 居留하고 있던 西洋人 들에 의해 刊行되고 있었다. 이 論文에서 徐載弼은

政府는 國民의 實情을 알아야 하고 國民들은 政府의 目的을 알아야 한다. 政府와 國民 相互間의 理解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雙方에 대한 教育뿐이다.……(中略) 教育없이는 國民들이 政府의 좋은 意圖를 理解하지 못할 것이고 教育없이는 政府 官吏들이 결코 좋은 法律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國民啓蒙의 必要性을 누누히 강조하였다.

실제로 國民啓蒙을 위해 그 해 純 한글의 『독립신문』을 刊行하였다. 한글로 펴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독립신문』 創刊號 論說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산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느거든 상하귀천이 다 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리케 귀절을 써여 쓴즉 아모라도 이 신문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못져 비화 능통할 후에야 외국 글을 리오는 법인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리오드리도 한문만 공부하는 짜름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쁜 거시 무어신 고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인 민들이 알아서 빅스을 한문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 써 번뜻하고 국문은 폐홀 짜름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인 민이 도로혀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제 엇거 한심치 아니하리요.……(下略)

이어 그 해 7월 獨立協會를 創設하였다. 이 協會에서는 먼저 國民의 獨立意識을 높이고 獨立의 意味를 깨우쳐 주기 위해 獨立門과 獨立館 등의 建立運動을 벌였고, 다시 討論會를 開催하여 啓蒙運動을 展開하였다. 그는 國民들에게 主權을 守護해야 된다고 외치는 한편으로 民權을 강조했고, 政府에 대해서는 法治主義의 實施를 要求했다.

民權에 대한 그의 主張은 『독립신문』 1897년(建陽 2) 3월 9일 字에 쓴 論說을 보더라도

나라이 진보되야 가는지 안 가는지 첫해보이논거슨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빚성된 권리를 차지라고 하는 거시라. 우리가 빚성이라 말하논거슨 다만 벼슬아
 니하는 사람만 가지고 말하논거시 아니라 누구던지 그나라에 사는 사람은 모두
 그나라 빚성이라. 빚성마다 얼마큼 하느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권리는 아모
 라도 갠지 못하논 권리요 그권리를 가지고 빚성노릇을 잘 하여야 그나라 님군의
 권리가 높하지고 전국 디베가 높하진 법이라. 조선 빚성들은 몇백년을 자기나
 라 사람들의게 압제를 받아 빚성의 권리라 하논거슨 당초에 다 이져 버렸고 또
 무슨 뜻신지도 모로논지라.……(下略)

고 있듯이, 國民 모두가 하나님이 준 權利를 지켜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
 은 말할 것도 없이 18세기 유럽社會에 風靡하였던 啓蒙主義의 中心思想,
 즉 天賦人權說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다음으로 法治主義에 대한 것을 보면 1897년 6월 16일 字 論說에,

세계 인민 중에 제일 불쌍한 빚성은 조선 빚성인데 그 불쌍한 자들은 다름이 아
 니라 남의 나라 인민들은 국중에 법률이 쇼상하고 학문이 진보하야 스물마다 법
 들문 범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지조가 잇스면 버려먹고 세상에 주주독립호 빚
 성이 되야 빈부귀천간에 사람마다 자기 신상에 자유권을 마지고 잇스며 사람마다
 스기 직분문 하거드면 세계에 무서울 것도 업고 귀계 천대 밧올리도 업논지라.
 조선은 법률도 쇼상치 않고 사람들이 학문도 업셔……(下略)

라 하여, 他國의 法律처럼 公正한 法律을 제정하여 國民의 權利를 보호해
 야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韓國에 法律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法律이 제대로 實施되지 않

고 있었고 實施되었다 해도 公平치 못하고 恣意的이었다. 그 까닭은 身分에 依해 法律이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徐載弼은 나라가 나라다 우려면 法律로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法治主義를 내세웠던 것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主張을 하면서 徐載弼은 韓國 最初의 民主的 討論方式를 紹介·實踐함으로써,⁴⁾ 한 모임에서 各 個人이 自身の 意思를 主張할 줄 알게 하고, 또 自己의 主張이 多數의 支持를 받을 때에야 正當化될 수 있다는 認識을 갖게하여 獨善的인 태도의 不當함을 認識시켜 주었다. 이러한 訓練을 통해 國民의 參與意識을 고취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國民들에게 自由精神, 民主精神의 覺醒을 促求하였던 것이다. 獨立協會는 創設된지 1년 半이 지난 1898년(光武 2) 2월부터 上疏, 그리고 萬民共同會와 같은 大衆集會를 통해 政治의 一線에 나서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1880년 後半期 美國의 改新敎 宣敎師들이 入國하여 新式 敎育機關을 설치하고 民主主義의 生活과 精神을 고취하였는데 培材學堂은 그런 기관 중의 하나였다.

徐載弼은 『독립신문』을 刊行하는 한편으로 每週 한번씩 培材學堂에 가서 特別 連續講義를 하였고, 또 協成會라는 討論會를 開催하여 學生들을 크게 啓蒙시켰다. 사실 이들 學生들이 徐載弼을 도와 政治運動을 활발히 展開하였던 것이었다.

獨立協會의 투쟁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國民의 自由權을 위한 투쟁이었다. 國民의 財產權과 身體의 自由를 위한 權利를 보장해 줄 것을 強力히 외쳤던 것이었다. 한편 議會의 設立도 要求하였으니 그것은 議會가 있어야만 國民의 소리를 收斂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獨立協會의 活動은 모두가 政府와 투쟁하는 것이면서 또한 專制君主權에 대한 制約을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政府側의 反動과 彈壓이

4) 「로버트」(Henry M. Roberts)라는 美國 學者가 쓴 『議會院規則』(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Parliamentary Assemblies)를 참고로 하였던 것 같다. 이 책은 尹致昊에 依해 抄譯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Korean Repository* Vol. 5(1898), p. 157 참조.

뒤따르게 되었다. 政府側에서는 法的 制裁形式을 취하여 集會는 獨立館 內에서만 開催하고 討論의 題目도 오직 非政治的인 것을 擇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獨立協會에서 완강히 抗拒함으로써 皇帝는 屈服을 하였다.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傳統的인 觀念의 테두리 안에서 皇帝가 讓步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國民이 君主를 抑壓하여 爭取한 것이었던 만큼 韓國의 民主主義 運動史에서 빛나는 事件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뒤 獨立協會는 官民共同會를 鍾路에서 개최하여 獻議 6條를 通過시켰고, 이에 대해 皇帝 또한 詔勅 5條를 내리는 등 길으로는 政界가 圓滑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威脅을 느끼고 있던 保守勢力이 裸負商으로 하여금 皇國協會를 組織·對抗케 함으로써 破綻이 나고 말았다. 즉 保守勢力이 皇帝를 움직이어 그 해, 즉 1898년 12월 25일 獨立協會를 해산시켰던 것이므로 모처럼 꽃을 피웠던 民主主義 運動도 당분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Ⅳ. 國家主義의 擡頭와 民主主義의 衰退

獨立協會가 강제 解散당할 무렵 大韓帝國의 爲政者들은 이미 向方을 잃고 있었고, 나라는 衰退의 길을 걸고 있었다. 이에 反해 日本은 初期 獨占資本主義體制를 갖추고 帝國主義國家로 登場하면서 韓國進出을 노렸다.

실제로 1904년 러시아와 戰爭을 일으켜 韓國에 進出, 主權을 마구 유린하였고, 다음 해 「포츠머드」(Portsmouth) 講和條約으로 韓國을 支配下에 놓자 保護條約을 締結하였다. 韓國의 運命은 風前의 燈火와 다를 바 없었다. 이 事態를 보고 韓國의 知識人들은 발버등을 치면서 나라의 將來를 걱정하였다.

때 마침 社會進化論이 韓國社會에 널리 紹介되었다.⁵⁾ 이것은 주로 中國

5) 拙稿 「舊韓末 進化論의 受容과 그 影響」, 『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所收 참조.

人 梁啓超(1873~1929)의 글에 의해 紹介되었다. 梁啓超는 1898년 戊戌政變이 失敗에 돌아 가자 日本으로 亡命하여 橫濱에서 雜誌를 發刊하였는데, 처음에는 『淸議報』(1898년 11월에서 1901년 1월까지), 뒤에는 『新民叢報』(1902년 1월에서 1907년 10월까지)를 發刊하였다. 그는 平易하고 流暢한 文章으로 부패한 本國 政府를 공격하는 한편 舊思想을 打倒하고 新思想을 紹介하는 데 힘썼다. 過激한 思想이 담긴 그의 글은 많은 讀者를 얻었고, 그리하여 몸은 비록 日本에 있었으나 中國안에서의 名聲과 影響은 실로 대단하였다. 뒤에 그는 자기가 쓴 글을 한데 묶어 『飲水室文集』이란 이름으로 刊行하였다.

韓國에서는 그가 日本에서 發刊하였던 雜誌 뿐만 아니라, 『飲水室文集』도 들어와 一般에게 널리 읽히었다. 심지어 『飲水室文集』은 學校의 教科書로까지 使用되었다.

梁啓超의 思想 중에는 「루소」(John Jacques Rousseau, 1712~1778)의 『民約論』內容도 들어 있었으나, 社會進化論이 中心을 이루고 있었다. 先輩 思想家 嚴復(1853~1921)이 英國의 哲學者 「허슬리」(Thomas Huxley, 1825~1895)가 쓴 『進化와 倫理』(Evolution & Ethics and other Essays)를 번역하여 『天演論』이란 이름의 책을 刊行하였는데, 梁啓超는 이 책을 통해 社會進化論을 吸收하였던 것이었다.

梁啓超는 社會進化論의 中心思想을 物競天擇(適者生存), 優勝劣敗(生存競爭)로 파악하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韓國에 들어와 知識人들의 政治意識을 昂揚시켰다. 尹孝定이 「生存의 競爭」이란 題目으로 연설한 內容 중에,

(上略)我國도 近年에 世界의 風潮가 流入하여 四千年以來로 鎖閉하였든 港灣이 一開하되 外人의 侵入이 日增月加함으로 生存競爭의 劇烈을 從此 感覺할지라……(中略)蓋優勝劣敗는 人事의 常이며 弱肉強食은 現世의 例어늘 我國의 形便을 鑑照하되 一層 深感을 不堪할 者 有하니……(中略)生存競爭을 不知하면 國家가 能히 版圖의 色을 不變할 者가 未有호 今日 二十世紀에 生存할 凡我同胞는 生産競爭의 要義를 勵精深究하실지이다.⁶⁾

6) 『大韓自強會月報』 11號(1907. 5. 25) 所收.

고 하여, 생존競爭이 社會의 普遍的인 原理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社會에서는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25일 字論說「合羣則強」에서 보이듯이,

現今 環球大陸 億兆蒼生 中에 命塗의 最窮薄者가 誰오호면 曰弱國人民이오 生活의 最困難者가 誰오호면 曰弱國人民이니 今之時代는 弱肉強食之世라……(中略) 今에 韓國이 雖이 弱나 二千萬人民이 合心同力호면 諸般事業에 雖辨之事가 無할 것이오 折衝禦侮에 勃然莫禦之勢가 有호려니와 만일 合羣力이 아니면 畢竟 強國의 魚肉을 不免호려니 此由를 不知호는가 何故로 愛國保種의 思想이 一向 冷淡호는. 同室遭焚호고 同舟遭溺호야 엇지 袖手傍觀之態를 作호리오. 惟願 大韓人民은 思之念之이다.

라 하여, 合羣, 즉 國民이 힘을 합쳐야만 國家의 命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知識人들은 保種, 즉 民族의 保存 問題도 심각히 생각하였던 것이니, 역시 同紙 1907년 7월 31일 字論說「保種策」중에,

嗚呼라 今日에 大韓國權이 既已全然 墜失하야 略無餘地矣오 惟其所存者는 二千萬人衆之生命也라. 蓋國家가 不存이면 人種이 隨以滅絕을 世界歷史에 前轍이 自在하니 此等境遇는 多言을 不俟호고 亦可洞悉할지라. 夫天下之興은 匹夫之微도 與有責焉이니 今日 大韓國勢之去가 伊誰之責호고 卽是二千萬人衆이 同受其責而不得辭避라. 噫라. 大韓人士여 以其閉鎖風氣와 恬嬉習慣으로 保國之圖는 既失之於前日하엿거니와 至于今日하야 保種之策도 思想치 아니호는가.……(下略)

라 하여, 國家가 무너지면 人種, 즉 民族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知識人들은 國家를 앞세우고 個人主義를 철저히 배격하게 되었다.⁷⁾

이런 분위기속에서 1890년대 後半期 獨立協會를 中心으로 일어났던 民主主義運動은 어느사이 뒷전에 물러서고 國家主義가 社會를 支配하게 되었다. 역시 同紙 1909년 5월 28일 字論說「帝國主義와 民族主義」를

7) 『大韓每日申報』 1907년 11월 21일 字論說「個人主義로 生을 求치 말지어다」 참조.

보면,

(上略) 然則此帝國主義를 抵抗하는 方法은 何인가. 曰民族主義(他民族의 干涉을 不受하는 主義)를 奮揮함이 是니라. 此 民族主義는 實로 民族保全의 不二門의 法門이라. ……(中略) 嗚呼라 民族主義를 捨하고 何를 當取하리오. 是故로 民族主義가 脹脹의 · 雄壯의 · 堅忍의 光輝를 揚하면 如何한 劇烈의 怪惡의 帝國主義라도 敢히 참래지 못하나니 要컨대 帝國主義는 民族主義 薄弱을 國에만 참入하나니라. ……(下略)

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民族主義는 國家主義로 바꾸어 놓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帝國主義의 侵入을 막기 위해서는 民族, 혹은 國家爲 先主義를 내세워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國家의 命脈이 유지 되느냐, 끊어지느냐 하는 急迫한 狀況에서 民主主義는 度外視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00년도 後半期 韓國 內에서 刊行되었던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과 같은 新聞, 그리고 『西北學會月報』와 『大韓自強會月報』와 같은 雜誌에 民權이니, 民主主義에 관한 글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V. 結 語

以上으로 開化期를 中心으로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受容문제를 살폈다. 1890년대 後半期 獨立協會의 活動으로 民主主義가 韓國社會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서 日本帝國主義의 침탈로 나라의 命脈이 끊어질 地境에 이르고, 또 生存競爭, 弱肉強食의 社會進化論이 크게 영향을 주면서 知識人들은 危機意識을 느끼고 保種, 즉 民族의 保存까지 우려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民主主義는 뒷전에 물러서고 國家爲 先主義가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獨立協會 中心의 民主主義 運動도 그 實相을 따져보면, 基本人權의 確保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權力의 行使 등의 문제와 관련

하여 立憲君主制下의 議會 설립 운동을 展開하여 한 때 中樞院이 그 구실을 맡는 것처럼 보였으나, 爲政者들이 民主主義를 實踐해 보려는 意志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成功될 수 없었다.

1905년 5월 尹孝定·李儁·沈宜性·梁漢默 등을 發起人으로 하여 憲政研究會가 설치되었다. 그 設置 綱領을 보면 王室이나 政府라도 憲法과 其他 法律을 지켜야 되고, 國民은 法律에 規定된 權利를 自由로이 누려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해 11월 保護條約이 체결되고 日本의 統監府가 설치되면서 憲政研究會는 해산을 당함에 事業 또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리고 合邦直前 兪吉濬이 『政治學』이란 原稿를 執筆하였고,⁸⁾ 安國善이 敦明義塾에서 講義한 內容을 土臺로 『政治原論』을 刊行하였다.⁹⁾ 이와 같은 책에는 民主主義 運營에 필요한 諸般 問題가 舉論되어 있었다. 그러나 大韓帝國이 終末을 告하는 마당에 一般의 注目을 끌 수 없었다.

8) 『兪吉濬全書』(一潮閣, 1971) IV <政治·經濟篇>에 收錄되어 있다.

9) 이 책은 1907년(隆熙元) 10월 皇城新聞社에서 刊行되었다.